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협조 요청

---

1. 귀 대학(교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 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 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,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 업체를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인한 「저작권법」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
3. 이에, 「저작권법」 제133조(불법 복제물의 수거·폐기 및 삭제)에 따라 우리 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,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제본 및 이용 등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"대학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"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
4. 아울러, 귀 대학(교) 내 불법복제물 제작과 이용 등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과 교내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 및 PDF파일 불법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협조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< 협 조 사 항 >

##### 가.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

-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(복사, 스캔, PDF파일 공유 등)하는 행위는 「저작권법」 위반이며,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민소소송의 대상임을 안내 요망
- 교내에서 불법복제물(스캔, PDF파일)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제/제본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
- 저작권자들은 대학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에브리타임 등에서 불법 복제된 대학교재 스캔파일을 공유·판매하는 학생들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

##### 나.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(무인스캔방 포함)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

-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교재 등을 복사 및 스캔하는 행위 금지
-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(PDF 스캔본 등) 공유도 「저작권법」 위반임을 안내
- 복사집 및 무인스캔방에서 개인의 스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요함

**다. 학교 자체 홍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안내**

-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 등을 학교 내 게시판, 대학신문, 누리집 등에 게재
- 『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』 을 학교 내 누리집 등에 게재

- 붙임 1.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 1부.  
2. 『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』 1부. 끝.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

수신자 전국대학(교) 총장

행정서기 최재영 방송통신사무관 조현훈 저작권보호과 전결 2025. 8. 13. 장 배양희

협조자

시행 저작권보호과-3219 (2025. 8. 13.) 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/ <http://www.mcst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2489 팩스번호 044-203-3461 / [jylkart@korea.kr](mailto:jylkart@korea.kr) / 대국민 공개